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2. 2. 27.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2년 2월 7일
-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 다. 회부일자 : 2012년 2월 16일 회부
- 라. 상정일자 : 제16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위원회(2012. 2. 23)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오승환)

가. 제안이유

- 더불어 사는 다문화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변화하는 다문화 사회의 실정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구체적인 외국인 주민 지원 관련 규정을 추가·신설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지원범위의 신설(안 제6조제1항제8,9호)
 - 결혼이민자 가족의 고국방문 및 초청 사업과 외국인주민 한국문화 이해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한 워크숍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현영)

- 이 개정 조례안은 변화하는 다문화 사회에 맞게 우리 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중 실정에 맞는 외국인주민 지원 계획 수립과 수요자 중심의 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마련 및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외국인주민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사업 지원범위에 제6조제1항제8호 “결혼이민자 가족의 고국방문 및 초청사업” 과 동조항제9호에 “외국인주민 한국문화 이해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한 워크숍 개최” 를 추가 신설함.
- 검토결과 이 개정 조례안은 저소득 결혼이민자 가족에게 고국방문의 기회를 제공하여 정서적 안정과 가족화합을 도모하고 외국인주민의 한국문화 이해와 안정적 정착을 위한 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우리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이 향상되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그 밖에 법체제나 자구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105 호
----------	---------

제출연월일 : 2012. 2.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더불어 사는 다문화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변화하는 다문화 사회의 실정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구체적인 외국인주민 지원 관련 규정을 추가·신설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 범위의 신설 (안 제6조제1항제8호 및 제9호)

- 결혼이민자 가족의 고국방문 및 초청 사업과 외국인주민 한국문화 이해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한 워크숍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 지원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합의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12.01.12~02.01) 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8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결혼이민자 가족의 고국방문 및 초청 사업
9. 외국인주민 한국문화 이해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한 워크숍 개최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7.(생략)</p> <p><u><신 설></u></p> <p><u><신 설></u></p> <p>8. (생략)</p> <p>② (생략)</p>	<p>제6조 (지원의 범위) ①----- ----- -----</p> <p>1.~7.(현행과 같음)</p> <p><u>8. 결혼이민자 가족의 고국방문 및 초청 사업</u></p> <p><u>9. 외국인주민 한국문화 이해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워크숍 개최</u></p> <p>10. (현행 제8호와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